

의안번호	2214168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C6075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6조의3 (정부의 지원)	정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실시할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3 (정부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회원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퇴직연금 급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정부가 이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정부가 지원할 비용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원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여 운용한 후 일정 연령 도달 시 지급하는 것으로, 별도의 추가재정 없이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

○ 다만,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비용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

－ 참고로,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회원인 과학기술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의 명시적 재정 보조는 없음.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3천 10억원(기술료 수입 1천억원, 일반회계 2천 10억원)을 발전장려금으로 출연하였고,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일부 지원대상¹⁾에게 퇴직연금급여 지급 시 추가금액을 지급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1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·직원,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·직원,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·직원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·직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립된 장려금 및 그 운용수익을 퇴직연금급여와 함께 지급함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